

# 기후변화협상의 이해

## 3차시. 우리나라의 입장

# 1. 우리나라의 협상 여건 분석

## (1) 한국의 경제적 위상

○ OECD 가입(1996)

- 2009.11 OECD 개발협력위원회(DAC) 가입으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 :  
24번째 회원국

○ GDP 규모(IMF, 2011) : 세계 15위(1조 144억불)

- 일본, 중국, 독일, 프랑스, 영국, 브라질, 이태리, 인도, 캐나다, 러시아, 스페인,  
호주, 멕시코, 한국 순

**\* 구매력(PPP) 기준으로는 12위**

○ 1인당 GDP(IMF, 2011) : 세계 31위(23,749불)

## (2)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현황

① 각국의 2010 CO<sub>2</sub> 배출 총량 및 개인당 배출량 현황

국 가	2010년 CO2 배출량(백만톤)	순위	개 인 당 배출량(톤)	순위	국 가	2010년 CO2 배출량(백만톤)	순위	개 인 당 배출량(톤)	순위
중 국	8950	1	6.8	12	브라질	430	10	2.2	16
미 국	5250	2	16.9	2	멕시코	430	11	3.8	14
EU(27개국)	4050	3	8.1	9	사우디	430	12	15.6	4
인 도	1840	4	1.5	18	호 주	400	13	18	1
러시아	1750	5	12.2	6	이 란	400	14	5.4	13
일 본	1160	6	9.2	8	남아공	380	15	7.6	10
한 국	590	7	12.3	5	우크라이나	310	16	6.9	11
캐나다	540	8	15.8	3	대 만	270	17	11.1	7
인도네시아	470	9	1.9	17	태 국	240	18	3.4	15

\* 자료 : PBL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,  
Long-term Trend in Global CO<sub>2</sub> Emissions : 2001 Report

② 1850-2002년간 CO2 누적 배출량(WRI, 2005)

\* 화석연료 및 시멘트 산업 배출량임

국 가	배출비중(%)	순 위	국 가	배출비중(%)	순 위
미 국	29.3	1	폴란드	2.1	12
EU(25개국)	26.5	2	이태리	1.6	13
러시아	8.1	3	남아공	1.2	14
중 국	7.6	4	호 주	1.1	15
독 일	7.3	5	멕시코	1.0	16
영 국	6.3	6	스페인	0.9	17
일 본	4.1	7	브라질	0.8	18
프랑스	2.9	8	한 국	0.8	19
인 도	2.2	9	선진국	75.6	
우크라이나	2.2	10	개도국	24.4	
캐나다	2.1	11			

(3) 다자협상 프로세스에서의 입장

- 수출비중이 큰 국가이자, 선진국/개도국의 대규모 블록에 속해있지 않은 국가
  -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, 선·개도국 양 진영 위주로 협상이 진행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상존
- 개도국 중 최초로 G20 개최, 기후변화 관련 선/개도국 가교역할
-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GGGI 설립 및 국제기구화

2. 기후변화 협상에 있어 우리나라의 입장

(1) 온실가스 감축관련 우리나라 입장

- ① 선진국의 선도적 노력,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
  - 기후변화협약의 기본 정신에 따라 Annex I 국가인 선진국이 기후변화의 역사적 책임에 따라 선도적 노력 필요
  - 또한 개도국의 감축과 적응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선진국의 의무
  - 교토의정서 2차공약기간도 최대한 감축을 위해 선진국들의 노력 필요
  - 개도국은 발리 액션플랜에 따라 자발적인 감축 가능

- 그러나 2°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도국도 최대한 노력할 필요 인정
- 가급적 개도국도 적절한 수준의 Measurable, Reportable, Verifiable 한 방식으로 감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

② 우리나라의 감축 공약

- o 우리로서는 2009년 COP15 코펜하겐 총회에서 2020년 BAU 대비 30% 감축이라는 공약(Pledge)
- 이는 IPCC가 권고한 개도국으로서 최대수준의 감축 목표임
- 또한 다른 개도국과 달리 재정지원, 타 국가 감축 수준 등의 조건부가 아닌 공약으로서 큰 의미

(2) Post 2020체제에 대한 입장

① 협약상 CBDR(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) 및 RC(Respective Capability)에 대한 우리의 해석 정립

- 미국, EU, 노르웨이 등 선진국은 CBDR는 20년전 개념으로서 고정된 개념이 아니고, 변화된 국제 경제정세 반영 필요성 주장(dynamic, modern CBDR)
- 각국의 능력(Respective Capability)에 대한 평가도 GDP, per Capita GDP, UNDP의 Human Development Index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필요성 주장

**\* UNDP Human Development Index는 수명, 문맹률, 교육, 생활수준 등 복지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료로서, 한국은 2011년 세계 15위로 평가됨.**

② "Equity" 원칙 평가 및 지지 강도 검토

- Equity의 해석도 다양한 바,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보면 역사적 책임(historical responsibility)에 해당되는 산업혁명 이후 누적 배출량 또는 개인당 배출량으로 해석 가능
- 인도는 연간 온실가스 개인당 배출량이 2톤 미만으로서, 향후 협상과정에서 개별국가의 감축수준 결정에 대비, equity를 협상의 중요한 원칙으로 제기하고, 총회 의제로도 상정시킴(의제명 : "equitable access to sustainable development")
- 우리는 1960년 이후 늦게 개발 및 산업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나, 본격 경제성장 이후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 높은 수준임

- ③ 우리의 특수한 사정(national circumstances)에 대한 설득 논리 개발
  - 각 국은 자국이 처한 특수한 사정을 협상과정에 반영키 위해 노력할 것이며, 전체 참가국들로부터의 공감대 확보를 위한 설득 논리 개발 필요
  - \* **싱가폴 : 면적이 작고 인구 밀집도가 큰 도시국가로서 온실가스 감축의 잠재력(potential)이 적고, 전 세계적 온실가스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작으므로 특별 고려를 주장**
    - 우리나라의 산업구조(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포함 제조업 비중이 높고, 서비스 산업 미약) 및 높은 무역 의존도 등을 감안, 선진국 식의 과감한 감축이 어려운 입장 설득 필요

**\* 우리나라는 1997년 Kyoto 의정서 협상 당시 협상 원칙으로 CDR, Equity, 비용 효과성과 경제 개발 및 개방적 국제경제 시스템과의 조화라는 3가지 원칙 제시**

### 3. 최근 동향 및 향후 입장

#### (1) GCF 유치

##### ① GCF란?

-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 금융기구
- UN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 목표 달성에 기여 개도국의 감축, 적응 노력을 지원하고 저탄소(low emission), 기후회복력있는(climate resilient) 개발 경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
- 새롭고, 추가적이고, 적절하며 예측 가능한(new, additional, adequate and predictable) 재원이 개도국에 지원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,
- 공공, 민간, 국제, 국가 수준의 기후 재원 마련의 촉매 역할을 수행

##### ② GCF 유치과정

- 대외경제장관회의('11.11)에서 GCF 유치 추진 결정
- 1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(COP17, '11.12) 환경부장관 기조연설 시 GCF 유치 의사 공식 표명
- 우리나라 등 6개국\*이 임시사무국에 유치신청서 제출 ('12.4.)
  - \*한국, 독일, 스위스, 멕시코, 폴란드, 나미비아
- GCF 1차 이사회(스위스 제네바, '12.8.23~25)
  - 유치국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6개국 선정
- GCF 2차 이사회시 한국 유치 결정 (인천 송도, '12.10.20)
- COP18에서 한국유치 최종 인준(카타르 도하, '12.12.9)

### ③ GCF 유치의 의미

- 아시아 지역 유일의 국제환경 기구 유치
  - ※ 환경관련 기구 소재지 : 유럽(9개), 북미(4개), 아프리카(1개)
- 환경분야 핵심 국제기구를 유치함으로써 지구환경분야에서 Soft Power와 리더십 강화
- 환경분야 컨설팅, 기술개발, 금융산업 Know-How 축적가능
- 원조 수혜국 및 개발도상국의 경험과 기후변화 정책 경험을 살린 중재자 역할 수행 필요

## (2) 최근 협상 동향(2012년 도하총회 COP18 결과)

① (교토의정서 연장)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('13.1.1-'20.12.31) 동안 선진국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규정하는 교토의정서 개정안 채택

- 부속서I 국가의 중기 감축목표(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-40% 감축)를 명시하고 이를 고려하여 2014년까지 감축목표 상향조정
- 다만, 캐나다는 교토의정서 탈퇴, 러시아·뉴질랜드·일본은 2차 공약기간 불참

② (재원)

- 만장일치로 GCF의 사무국을 대한민국 송도로 결정한 이사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신속한 작업계획 실행 및 정상운영을 촉구
- 2020년까지 1,000억불을 조성하는 장기재원과 관련한 논의는 1년 연장하되, 선진국이 1천억불 조성경로(pathways)에의 전략과 접근법을 제출하고 COP19의 고위급회의에서 장기재원 조성의 진전 평가
- 선진국이 2013-15년간 최소한 평균 단기재원(fast-start finance, 2010-12) 규모(연간 100억불 의미) 조성 장려, 상설위원회 하의 연간 100억불 조성을 위한 기후재정 포럼 설치 등

③ (장기협력행동) 합의(Agreed Outcome) 도출을 통해 장기협력행동 작업반(AWG-LCA)을 종료하고 일부는 부속기구(SBs) 등으로 이관

- 개도국 감축행동 이해증진 워크프로그램 설립, 개도국감축노력에 상응하는 재정·기술 및 능력형성 지원 필요성 명시

- 협약 하에서 적응 논의 계속 명시, 적응위원회에 적응포럼 개설
- 범지구적 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달성 방안에 대해 '13년부터 검토개시
- ④ (Loss and Damage)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(Loss and Damage) 에 대한 논의촉진 및 지원을 위한 국제적 메커니즘 설립 결정
- ⑤ (더반플랫폼)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 출범 및 2020년 이전 감축상향 논의를 위한 작업계획(workplan) 논의
  - 2013년부터 본격 협상개시, 2014년말에 개최되는 COP20까지 협상문안 초안 마련

### (3) 향후 전망

- ① GCF 유치국가로서 기후재정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
  - 개도국에 대한 중기재정 지원 및 장기재원 조성 논의가 2013년 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바, GCF의 조속한 운영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
- ② 단일의 법적 체제 관련 협상 전략 수립
  - 2020년이후 기후체제 마련 및 2020년이전 감축**목표** 상향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전망
  - 특히, 선발개도국으로 GCF를 유치한 우리나라에 대한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에서의 확대된 역할 요구 증대에 대비할 필요
  - 감축 차별화 기준으로 적용할 국가별 고려요소에 대해 우리의 산업구조,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여력 등을 감안하여 우리입장 마련
- ③ 우리 주도의 기후변화협상 회의 마련
  - 2012년 기후변화각료급회의(PRE COP) 이후 정례적 고위급 회의 개최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협상의 장 마련
  - 온실가스 감축 및 재정지원 확대 등에 대하여 중재자적 입장에서 균형적 결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

## 참고문헌

김찬우, 포스트 2012 기후변화 협상, 에코리브르

최재천외, 기후변화 교과서, 도요새

환경부, 2012 기후변화협상 편람

환경부, 기후변화협상문서집

기후변화행동연구소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 편, 코펜하겐에서 칸쿤까지, 환경재단

박천규외 4인, 탄소, 사고 팔 준비가 되었나요?, 도요새